

I. 서 론

1962년 3월 15일 미국 케네디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이익의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¹⁾에서 최초로 소비자권리를 선언했고,²⁾ 유엔은 1985년 제정된 유엔소비자보호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Resolution 39/248)(1999년 개정)의 내용을 채택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법제를 마련

하도록 촉구했다.³⁾ 이후 미국, 유럽연합 등은 물론 아시아,⁴⁾ 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헌법상 소비자권리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권리보호의 불모지였던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공화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 International)⁵⁾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독자적인 소비자보

- 1) Kennedy, John F.,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 1962.3.15,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9108>
- 2) 소비자법의 탄생시점을 케네디대통령 소비자권리선언의 1962년으로 본다. Hondius, Ewoud, The Innovative Nature of Consumer Law, Journal of Consumer Policy, Vol.35, No.2, 2012, 166쪽. 1962년 소비자권리선언 이후에 대해서는 김성천, “소비자권리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비자정책동향」 제33호, 한국소비자원, 2012 참조.
- 3) 유엔소비자보호지침에 대해서는 Harland, D. J.,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 Their Impact in the First Decade, in Ramsay, Iain, Consumer Law in the Global Economy :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 Ashgate, 1997; Harland, D. J.,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Vol. 10, 1987 ; 김성천, “유엔소비자보호지침(UNGCP)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비자정책동향」 제47호, 한국소비자원, 2013 참조.
- 4)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2004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칭)을 시작으로 스리랑카 1979년 소비자보호법, 태국 1979년 소비자보호법, 한국 1980년 소비자보호법(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칭), 인도 1986년 소비자보호법, 몽골 1991년 소비자보호법, 필리핀 1991년 소비자법, 중국 1992년 소비자권익보호법, 대만 1994년 소비자보호법, 인도네시아 1999년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말레이시아 1999년 소비자보호법, 베트남 2010년 소비자권익보호법 등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소비자기본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개정”, 「법제」 통권558호, 2004. 6 ;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6권 제2호, 2007; 베트남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베트남 2010년 소비자권익보호법”, 「법제」, 2011. 5 참조.
- 5) 국제소비자기구는 1996년 “아프리카 소비자보호법 모델(Model Law For Consumer Protection In Africa), 2011년 “소비자보호법 개발가이드(A guide to developing consumer protection law)” 등을 통해 아프리카 소비자법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Consumer International (CI), A guide to developing consumer protection law, 2011,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media/715456/a-guide-to-developing-consumer-protection-law.pdf>, Harare, Model Law For Consumer Protection In Africa, Consumers International Regional Office for Africa, 1996. 참조.

호법제를 마련했다.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1992년 소비자보호위원회법, 보츠와나 공화국의 1998년 소비자보호법, 이집트 아랍공화국의 2006년 소비자보호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08년 소비자보호법, 케냐공화국의 2012년 소비자보호법 등 아프리카 소비자보호법제는 확산되고 있다.^{⑥)}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비자 보호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은 다양한 정치체제나 경제체계 만큼이나 소비자보호법의 정비 속도와 수준은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의 소비자보호법은 아프리카에 관한 법제정보로서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비교법적 지평을 확대해 줄 것이다.

이 글은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케냐공화국(Republic of Kenya)의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No. 46 of 2012)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과 헌법의 소비자권리규정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케냐공화국의 소비자보호법은 처음으로 2007년 소비자보호법안이 제안되었고, 재차 2011년 소비자보호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년 12월 의회를 통과,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 소비자보호법안^{⑦)}은 총 11장, 1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2011년 소비자보호법안^{⑧)}은 총 11장 94개 조문으로 수정되었으며, 2012년 소비자보호법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11년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2007년 법안 중 많이 수정된 내용은 제10장이다. 2007년 법안에서는 행정(administration)이라는 표제 아래 13개 조문이 있었고, 소비자보호추진기관을 소비자보호원(Consumer Protection Authority)이라고 했으나, 2011년 법안에서는 소비자보호위원회(Consumer Protection Committee)라는 표제아래 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 관한 2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한편, 제2조(해석)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추가되었는데, 소비자개념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2007년 법안에서는 소비자란 “사적, 가족 또는 가계목적을 위한 개인이고, 사업의 목적을 위한 개인을 배제한다.”^{⑨)}고 규정했는데,

- 6) 아프리카국가 소비자보호법의 동향에 대해서는 김성천, “아프리카 소비자법제 동향과 과제”, 「글로벌 소비자 법제 동향」 제 1권 제1호, 2014 참조.
- 7) 2007년 소비자보호법안(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07)의 원문은 <http://www.kenyalaw.org/Downloads/Bills/The%20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07.pdf>
- 8) 2011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원문은 <http://www.parliament.go.ke/plone/archive/archive-10th-Parliament/bills/The%20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11/view>
- 9) ““consumer” means an individual acting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and does not include a person who is acting for business purposes.

2011년 법안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개인”¹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2012년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를 4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했다.

2. 2010년 헌법의 소비자권리규정

케냐공화국은 2007년 소비자보호법안 제안 이후 201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케냐공화국 헌법은 1963년 제정되었고, 2010년 전면개정된 케냐공화국 현행 헌법은 18개의 장과 2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은 절로 나누어졌다.¹¹⁾ 소비자권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46조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 제2절 권리와 기본적 자유(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46조는 소비자권리(consumer rights)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제2장은 의회의 소비자보호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의무를, 제3항은 적용범위를 공공서비스와 사인간의 거래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¹²⁾

- 소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 물품과 용역의 합리적인 품질에 관한 권리
 - 물품과 용역으로부터 충분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관한 권리
 - 건강, 안전, 경제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 물품이나 용역이 하자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의회는 소비자보호와 공정, 진실, 적절한 광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해 제공된 물품과 용역에도 적용된다.

III. 소비자보호법의 구성과 내용

1. 구성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근거는 2010년 헌법 제46조(소비자권리) 제2항이다.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은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소비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

10) “consumer” means a person who purchases goods or services.

11) 케냐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홍완식,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9권 1호, 2013 참조. 케냐공화국 헌법 원문은 <https://www.kenyaembassy.com/pdfs/The%20Constitution%20of%20Kenya.pdf>

12) 46. (1) Consumers have the right

- (a) to goods and services of reasonable quality;
- (b) to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m to gain full benefit from goods and services;
- (c) to the protection of their health, safety, and economic interests; and
- (d) to compensation for loss or injury arising from defects in goods or services.

(2) Parliament shall enact legislation to provide for consumer protection and for fair, honest and decent advertising.

(3) This Article applies to goods and services offered by public entities or private persons.

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보호법은 총 11장 9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제1장 총론, 제2장 소비자권리, 제3장 불공정행위, 제4장 특수소비자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5장 수수료금지영역, 제6장 자동차 등 기타 물품의 수리, 제7장 신용계약, 제8장 리스, 제9장 소비자구제절차, 제10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제11장 보칙 등이다.

케냐공화국의 소비자보호법은 집단소송 등 절차법적 내용과 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 관한 행정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소비자 거래에서의 소비자권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법 또는 소비자계약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1) 총론

소비자보호법 제2조(해석)는 소비자(consumer), 소비자계약(consumer agreement), 소

비자거래(consumer transaction), 직접계약(direct agreement), 사업자(supplier) 등 다양한 적용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의 정의에서 소비자를 4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가맹점 사업자를 포함했다.

소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자의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특정물 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자
- 이 법의 적용제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자의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 해당 특정물품과 용역의 공급에 관한 거래의 당사자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 품의 이용자나 특정서비스의 수령자 또는 수혜자
-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정도에서 가맹점 계약의 가맹점사업자¹⁴⁾

한편 사업자의 정의에서 사업자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리스, 무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사업을 하는 자라 정의하고, 이에는 사업자의 대리인, 사업자 또는

13) 2012년 소비자보호법 원문은 <http://www.parliament.go.ke/plone/statutory-documents/consumer-protection-act-no-46-of-2012>

14) “consumer” means

- (a) a person to whom particular goods or services are market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supplier's business;
- (b)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transaction with a supplier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supplier's business, unless the transaction is exempt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Act;
- (c) a user of particular goods or a recipient or beneficiary of particular services, irrespective of whether that user, recipient or beneficiary was a party to a transaction concerning the supply of those particular goods and services; and
- (d) a franchisee in terms of a franchise agreement, to the extent applicable in terms of this Act;

사업자의 대리인이라고 나타내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

2) 소비자권리

소비자보호법 제2장(소비자권리)은 집단 절차(class proceedings), 품질보증(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견적(estimate), 모호성(ambiguities), 인터넷게임사이트(adverising illegal sites)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는 집단을 대신하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거나 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관련 절차에서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제4조 제1항) 집단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법의 절차를 이용한 분쟁해결을 합의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합의된 절차에 의한 합의나 결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제4조 제3항).

둘째, 사업자는 소비자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과 용역이 합리적 적합품질(reasonably merchantable quality)이라는 것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며(제5조 제1항) 묵시적 보증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계약에 견적을 포함한 경우, 사업자는 견적의 10%를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제6조 제1항). 사업자가 견적의 10%를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견적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넷째, 모호한 계약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소비자계약이나 이 법에 의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넘는 모호성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제7조).¹⁶⁾

다섯째, 누구든지 법률에 위반한 인터넷게임을 광고할 수 없다고(제11조 제1항), 인터넷게임사이트 광고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불공정행위

제3장(불공정행위)은 일정한 불공정행위(unfair practices)를 금지하고, 이어서 불공정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공정행위란 사람들에게 거짓, 오인, 기만적 표시(false, misleading or deceptive representation)를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제12조 제1항), 거짓, 오인, 기만적 표시의 유형을 13 가지로 규정하며(제12조 제2항), 비양심적 표시(unconscionable representation)를 자세하게

15) "supplier" means a person who is in the business of selling, leasing or trading in goods or services or is otherwise in the business of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nd includes an agent of the supplier and a person who holds himself out to be a supplier or an agent of the supplier.

16) 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제5조 제2항)과 유사하다.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둘째, 불공정행위로 서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의 해제권(rescinding agreement) 및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제16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4) 특수소비자계약

제4장(특수소비자계약)은 장래이행계약(future performance agreement), 시간분할계약(time share agreements), 인터넷계약(internet agreements), 직접계약(direct agreements), 원격계약(remote agreements) 등에서의 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장래이행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법정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제18조). 제18조의 요건을 만족한 계약서의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cancelling)할 수 있다(제19조).

둘째, 시간분할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무조건(wihtout any reason)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셋째, 인터넷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38조 제1항의 법정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을 승낙하거나 거절 또는 오류를 시정할 명시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

우 계약서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사업자가 제43조(금지된 표시)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넷째, 직접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법정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제18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제34조의 요건을 만족한 계약서의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5) 수수료금지

제5장에서 수수료금지영역(sectors where advance fee prohibited)으로 대출중개(loan brokering)계약, 신용회복(credit repair)계약, 별도로 규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계약 등을 규정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제39조), 예외의 경우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지급(payment)이나 지급담보(security for a payment)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제40조 제1항). 소비자는 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6) 자동차 등의 수리

제6장은 자동차 기타 다른 물품의 수리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수리업자는 처음에 법정요건을 충족한 견적서를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한 정비나 수리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제44조 제1항), 일정한 예외도 있다(제44조 제2항). 수리업자는 소비자가 정비나 수리를 지시하지 않은 한 정비나 수리에 대해 청구할 수 없고(제46조 제1항), 견적에 따른 정비나 수리에 대해서는 견적 보다 10%이상 넘은 경우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제46조 제2항). 수리업자는 부품이나 정비에 대해 최소 90일 또는 5,000km 이내에 품질보증해야 한다(제51조 제1항). 수리업자는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통 동일한 정비나 수리에 대해 부과되는 것 보다는 큰 금액으로 정비나 수리에 대해 청구하거나 견적을 낼 수 없다(제52조).

7) 신용계약 및 리스

제7장은 신용계약(credit agreements)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적용·제외범위(제53조), 신용카드계약(제54조), 비공시의 효력(제56조), 선택적 서비스의 해제(제59조), 사전지급(제62조), 공시요건(제63조), 중개수수료의 공시(제64조) 등이 있다.

제8장은 리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제72조), 표시(제73조), 공시문서(제74조) 등이 있다.

8) 소비자구제절차

제9장은 소비자구제절차(procedures for consumer remedie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제75조), 소비자통지의 형식(제76조), 구속력 없는 소비자계약(제77조), 소비자계약의 취소(제78조), 취소의 효력(제79조), 취소에 따른 의무(제80조), 불법청구 및 지급(제81조 및 제82조), 소송(제84조), 정보의 공시(제87조), 중재의 제한(제88조) 등이 있다.

중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계약서상 중재조항이 있더라도 이 법에 따른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조 제1항).

9) 케냐 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10장은 케냐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Kenya Consumer Protection Advisory Committe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케냐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제89조 제1항)와 함께 구성원은 무역 및 산업담당부서의 차관, 법무부장관, 인가소비자단체가 지명하는 4명, 표준국이 지명하는 1명, 의료협회가 지명하는 1명, 제조자협회가 지명하는 1명, 금융·회계·경제학·보험문제 등의 경험을 가진 1명, 변호사회에서 지명한 1명 등이다(제89조 제1조 제d호).

케냐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자문, 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 소비자보호법제의 개정, 소비자활동의 조직화와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발전, 소비자교육의 촉진, 소비자권리 및 책임에 관한 상담, 소비자분쟁해결 기구의 설치 및 촉구 등의 기능을 갖는다(제90조).

10) 보칙(general)

제11장은 일반적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백만 실링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과가 가능하다(제9조).

III. 결어 – 평가 및 시사점

아프리카 소비자운동은 1970년 말부터 시작되었고, 아프리카 소비자단체가 국제소비자기구의 멤버가 된 1991년 이후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법제가 정비되고 있다.¹⁷⁾

아프리카 국가 중 케냐공화국은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야에서는 후발국 가이다.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식민지로부터의 독립한 이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장경제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민사실

체법, 절차법, 행정법 등 혼합형식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와 비교하면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특징과 함께 한계도 있다.

첫째,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다양한 소비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거래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소비자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반해,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장래이행계약, 시간분할계약, 인터넷계약, 직접계약, 신용계약, 리스 등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권리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집단절차, 품질보증(제5조), 견적(제6조), 수수료(제5장), 수리(제6장), 리스(제8장), 중재(제78조) 등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에서는 없는 규정이 많다. 이런 점에서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개선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비교법적 법률이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3항에 따른 고시인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제8조 제2항 관련)에 견적, 수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견적이나 수리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행정체계,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안전 등을 규

17) 국제소비자기구에 가입된 케냐공화국 소비자단체는 Consumer Information Network of Kenya (CIN), Kenya Consumers Organisation, Youth Education Network (YEN)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소비자기구 홈페이지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our-members/member-directory/> 참조.

정하고 있는데 반해, 케냐공화국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거래 이외에 소비자안전, 소비자분쟁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케냐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국가의 법제연구는 시작단계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고,¹⁸⁾ 소비자보호법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법제 연구를 넘어, 아프리카의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법제의 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¹⁹⁾

아프리카의 소비자보호법제는 향후 아프리카국가의 시장경제의 정착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에게도 아프리카 시장에 진

입하는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1992년 소비자보호위원회법, 보츠와나 공화국의 1998년 소비자보호법, 이집트 아랍공화국의 2006년 소비자보호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08년 소비자보호법 등 아프리카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제는 다른 나라의 소비자보호법제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아직 소비자보호법제가 없는 아프리카국가들도 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법제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²⁰⁾ 향후 아프리카 소비자보호법제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 성 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트, 케냐, 에티오피아 등의 법제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최신외국법제정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아프리카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 19)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제27조 제1항).
- 20) 대표적으로 모리셔스 공화국(Republic of Mauritius)의 경우 2010년에 법률개혁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가 '소비자보호법제와 개혁제안(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roposals for Reform)'이라는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고 <http://lrc.gov.mu/English/Documents/Reports%20and%20Papers/30%20rep-con.pdf>, 2013년에는 기업·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장관(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Consumer Protection)이 소비자보호법안 제안 워크샵을 개최했다 <http://www.gov.mu/English/News/Pages/Workshop-on-New-Consumer-Protection-Bill-Starts-World-Consumer-Rights-Day%20%80%99s-Celebrations.aspx>

참고문헌

- 김성천,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개정”, 「법제」 통권 558 호, 2004. 6.
- _____,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경 제법연구」 제6권 제2호, 2007.
- _____, “베트남 2010년 소비자권익보호법”, 「법제」, 2011. 5.
- _____, “소비자권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비자정책동 향」 제33호, 한국소비자원, 2012.
- _____, “유엔소비자보호지침(UNGCP)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비자정책동향」 제47호, 한국소비자원, 2013.
- _____, “아프리카 소비자법제 동향과 과제”, 「글로벌 소비자 법제 동향」 제1권 제1호, 2014.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 홍완식,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9권 1 호, 2013.
- Consumer International (CI), A guide to developing consumer protection law, 2011.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media/715456/a-guide-to-developing-consumer-protection-law.pdf>
- Harare, Model Law For Consumer Protection In Africa, Consumers International Regional Office for Africa, 1996.
- Harland, D. J.,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Vol. 10, 1987.
- _____,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 Their Impact in the First Decade, in Ramsay,

Iain, Consumer Law in the Global Economy :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 Ashgate, 1997.

Kennedy, John F.,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Protecting the Consumer Interest, 1962.3.15,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9108>

Law Reform Commission,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roposals for Reform, 2010, <http://lrc.gov.mu/English/Documents/Reports%20and%20Papers/30%20rep-con.pdf>

케냐공화국 2007년 소비자보호법안, <http://www.kenyalaw.org/Downloads/Bills/The%20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07.pdf>

케냐공화국 2011년 소비자보호법안, <http://www.parliament.go.ke/plone/archive/archive-10th-Parliament/bills/The%20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11/view>

케냐공화국 2012년 소비자보호법, <http://www.parliament.go.ke/plone/statutory-documents/consumer-protection-act-no-46-of-2012>

케냐공화국 헌법, <https://www.kenyaembassy.com/pdfs/The%20Constitution%20of%20Kenya.pdf>

국제소비자기구(CI) 홈페이지,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

모리셔스공화국 뉴스, Workshop on New Consumer Protection Bill Starts World Consumer Rights Day's Celebrations, 2013.3.18, <http://www.gov.mu/English/News/Pages/Workshop-on-New-Consumer-Protection-Bill-Starts-World-Consumer-Rights-Day%20Celebrations.aspx>